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포장방법및 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2.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 3 조 (도민의 책무) 충청북도 도민은 재활용품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도지사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매년 지정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 조 (대형폐기물등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시·군별로 못쓰게 된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활용 가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금속류(폐금속, 캔류를 포함한다)
2. 폐종이
3. 폐유리
4. 폐플라스틱
5. 기타 환경처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것

제 3 장 보 칙

제12 조 (보고 및 검사등)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상의무자·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와 각 시·군·출장소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 조 (청문) 도지사는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 조 (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시·군별 집하·보관 장소의 설치 사무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제 15 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등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조성하는 재활용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단체·재활용사업자·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이전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별 칙

제 17 조 (과태료) 도지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18 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대표 부 과 기 준

단위 : 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1.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기준보다 25퍼센트 미만 초과한때	1,500	2,000	3,000	
나. 기준보다 25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초과한때	2,000	2,500	3,000	
다. 기준보다 50퍼센트 이상 초과한때	2,500	3,000	3,000	
2. 포장횟수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기준보다 1회를 더 포장한때	1,000	1,500	3,000	
나. 기준보다 2회를 더 포장한때	1,500	2,000	3,000	
다. 기준보다 3회를 더 포장한때	2,000	2,500	3,000	
3.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2,000	2,500	3,000	
4.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2,000	2,500	3,000	
5.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기 준			비 고
	1차	2차	3차	
6.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용적이 3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7. 제조자 등이 가전제품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